

###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일용직 잡부 사망, 영업용택시)

# 소 장

원 고 1. 박○○(주민등록번호)

- 2. 김①○(주민등록번호)
- 3. 김②○(주민등록번호)원고들의 주소:○○시 ○○구 ○○길 ○○ (우편번호)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시 ○○구 ○○길 ○○(우편번호) 회장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 박○○에게 금 ○○○○원, 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게 각 금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들의 지위

- 가. 원고 박○○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김◉◉의 처이고, 원고 김①○, 원고 김②○는 각 소외 망 김◉◉의 아들입니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인 소외 ◎◎운수(주) 소유의 ○○32파 ○○○○호 영업용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가. 소외 ◎◎운수(주)의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소외 최◈◈는 20○○. ○. ○. 21:00경 소외 ◎◎운수(주) 소유의 ○○32파○○○○호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방면에서 ○○방면으로 운행 중 ○○시 ○○구 ○○길 ○○은행 앞노상에 이르렀는바, 이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미리 속도를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때마침 위 가해차량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상을 건너던피해자 소외 망 김◉◎를 그대로 치어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습니다.
- 나. 이 경우 소외 ◎◎운수(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피고는 위 사고차량에 관한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위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가. 소외 망 김◉◉의 일실수입

소외 망 김◉◉는 19○○. ○. ○.생의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통계청 발행의한국인생명표에 의하면 사망일 현재 기대여명은 ○○년이므로 71세까지는생존이 추정됩니다.

위 망인은 시골에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위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시 ○○동에서 거주하면서 일용직 잡부로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온 사람으로 특별한 직업이나 기술은 없었고 일정한 소득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사망일에 가까운 20○○. ○.의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월간거래가격에 따르면평균 도시일용노임이 ○○○원인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도시일용노동자로서 적어도 매월 22일씩 일하여 기대여명내인 60세까지 ○○년 ○개



월 동안은 근로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 하여 사망함에 따라 그 소득을 매월 순차적으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실한 위 소득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단리 연 5%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그 현가를 계산하면 금 ○○○○○○원{도시일용노임 ○○○원×22일×60세까지 ○○○개월에 대한 단리연금현가표상 수치(호프만수치)}이 됩니다.

여기서 위 망인의 생계비로 3분의 1정도를 공제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소외 망 김◉◉의 일실수입의 총액은 금 ○○○○○원(위 현가 금 ○○○○×2/3, 원미만 버림)이 됩니다.

#### 나. 소외 망 김◉◉의 위자료

소외 망 김◉◉가 사망함에 있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사정은 쉽게 짐작되는 바이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망인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로 금 ○○○○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 상속관계

피고의 소외 망 김◉◉에 대한 배상책임의 액수는 앞서와 같이 합계 금 ○ ○○○○원(일실수입 금 ○○○○○원+위자료 금 ○○○○원)이 되는바, 그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은 그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 박○○에게 금○○○○ 원(위 합계 금○○○○○원×3/7), 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게 각 금 ○○○○원(위 합계 금○○○○○원×2/7)씩 귀속되었습니다.

#### 라. 원고들의 위자료

앞서와 같이 소외 망 김◉◉가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 또는 아들인 원고들이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되는 바이므로 피고로서는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학력·경력·신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의 처인 원고 박○○에 대한 위자료는 금 ○○○, 그의 아들인 원고 김①○, 같은 김②○에 대한 위자료는 각 금 ○○○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마. 소외 망 김●●의 장례비

원고 박○○은 위 망인의 처로서 금 ○○○원 정도를 지출하여 그 장례를 치루었는바, 이러한 지출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박○○가 입은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원고 박○○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에게 금 ○○○○원(상속분 금 ○○○○원+위자료 금 ○○○원+장례비 금 ○○○원), 원고 김①○, 원고 김②○에게 각 금 ○○○원(상속분 금 ○○○○원 + 위자료 각 금 ○○○원)씩을 지급하여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 및 이에 대한 민법과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4호증 자동차등록워부

1. 갑 제5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 제6호증 사망진단서

1. 갑 제7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표지 및 내용

1. 갑 제8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위 원고 1. 박〇〇 (서명 또는 날인)

2. 김① (서명 또는 날인)

3. 김②○ (서명 또는 날인)

##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경제수준,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연령별 근로자인구 수,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직업,경력,건강상태 등 구체적인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1.3.9.선고 2000다59920 판결).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함(대법원 1991.3.27.선고 90다11400 판결, 1991.4.23.선고 91다6665 판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2%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지연손해금

####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 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교통사고발생 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또한, 금전채권의 경우 의무이행 지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음.

#### ※ (2) 소멸시효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민법 제 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